
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. 2. 12 선고 2017가단1764, 2018가단188(병합)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철

변론 종결 2019. 1. 29

판결 선고 2019. 2. 12

주 문

1. 피고 C은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D 임야 237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6, 17, 18, 19,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28㎡ 지상 조립식창고 건물, 같은 도면표시 19, 18, 22, 23, 14, 4,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19㎡ 지상스라브주택 건물 및 경남 거창군 E 임야 61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5, 16, 19, 20,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다)부분 2㎡ 지상 조립식창고 건물,같은 도면표시 21,20, 19, 4, 5, 241) ,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라)부분 1㎡지상스라브주택건물을 각 철거하고,위 토지를 인도하라.

2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,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B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갑 제1호증의 1, 2, 3의 각 기재,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거창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F가 경남 거창군 D 임야 237㎡ 및 E 임야 61㎡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와 한다)에 관하여 1999. 2. 18.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가 2017. 7. 4.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7. 6. 30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피고 B가 1991. 9. 27.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경남 거창군 G 답 527㎡(이하 '이 사건 인접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1991. 9. 24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B의 처남 C이 1993. 2.경 이 사건 인접토지지상에 스라브주택 건물을 신축하고, 20005. 4.경 위 스라브주택 건물 옆에 조립식창고건물을 신축하였는데,위 스라브주택 건물은 경남 거창군 D 임야 237㎡ 중 별지 도면표시 19, 18, 22, 23, 14, 4,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19㎡과 경남거창군 E 임야 61㎡ 중 별지 도면 표시 21, 20, 19, 4, 5, 24,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라)부분 1㎡을 침범하고 있고, 위 조립식창고 건물은 경남 거창군 D 임야237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6, 17, 18, 19,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28㎡과 경남 거창군 E 임야 61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5, 16, 19, 20,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다)부분 2㎡를 각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(나), (라)부분 지상의 스라브주택 건물과 위 (가), (다)부분 지상의 조립식창고 건물을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침범한 스라브주택 건물과 조립식창고 건물은 건물을 신축한 피고 C의 소유라 할 것이고, 피고 B는 위 각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으므로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황지원

별지

1)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"24, 25"로 기재되어 있으나, 오기로 보인다.